

	<b>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학적업무 처리지침</b>	규정번호	3-3-18	
		제정일자	2006.01.20	
		개정일자	2011.02.01	
		개정번호	Ver .2	총페이지

1. 복학을 하고자 하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① 학년에 상관없이 동일학과의 다른 모집단위 또는 타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 ② 야간 산업체위탁반을 운영하는 학과는 산업체위탁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③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2. 3년제 학과를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였거나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개강 이후에 휴학한 자(80학점 이상을 충족한 자)가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고자 하였으나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2년제 학과로 전과 후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과 신청을 허용하되, 전과 후 2년제 학과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 학부 내 전과 시에는 졸업을 허용하지만 타 학부로 전과하는 경우는 전입학과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 ② 2년제 학과로 전과하더라도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보류자로 처리한다.
  - ③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하여 2년제로 졸업하는 경우에는 자퇴자 환불기준에 따라 등록금 차액을 환불한다.
  - ④ 3년제 학과에서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기 이수한 성적이 인정되어 2년제 학과로 졸업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3학년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3. 복학대상자가 기 이수한 성적이 불량하여 학기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포기 후 전과를 할 수 있다.
  
4. 교과목 이수구분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 ① 전과 후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전입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전입학과의 전공 필수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할 수 있다.
  - ② 전과하는 학기 이전의 전입학과 정규과정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교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③ 정규과정 입학자가 산업체위탁반에 편성된 경우
  - ㉔ 교육과정이 상이하여 부득이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㉕ 산업체위탁 교육과정인 현장실무 과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다.
  - ④ 전과하여 전공최저이수학점에는 미달되지만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